

아동학대 연구와 조사의 윤리*

Ethical Issues in Child Abuse and Neglect Research*

이재연(Jae Yeon Lee)¹⁾

ABSTRACT

The conduct of research in the area of child abuse and neglect is one of the most difficult tasks in social science research. One requirement for maltreatment research is knowledge of the type and amount of exposure to child abuse or neglect. This paper addressed methodological and ethical consideration that are especially pertinent to research about child maltreatment. Issues of the subject recruitment, informed consent, confidentiality, and reporting that arises in the course of carrying out such research were discussed. Additional work is needed to implement definitional, legal, and ethical guidelines for those who study child abuse to help clarify some of the complexity inherent in work in this field.

Key Words : 아동학대(child abuse), 연구윤리(research ethics), 비밀보장(confidentiality).

I. 아동학대 연구와 조사에서 윤리지침의 필요성

아동학대를 연구하거나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가족과 관련된 다른 어떤 영역에서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민감한 윤리적, 법적 논쟁이 발생한다. 일차적으로 제기되는 논쟁은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어느 수준에서 아동학대를 다룰 것인가 하는 이데올로기의 문제이다. 즉, 아동학대를 ‘아동에게 제공해 주어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수준’에서 다루어야 할지, 아니면 ‘아동에게 필요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다루어

야 할지, 혹은 이 두 가지 가치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어느 수준이 있는가를 결정해야 한다. 어떤 가치기준을 설정하는지에 의해서 아동보호 서비스는 치료 중심의 사후서비스가 되거나, 예방 중심의 사전서비스가 된다.

아동학대의 연구과정에서 윤리적, 도덕적 가치 갈등은 실제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세밀한 형태로 표현된다. 예컨대 부모와 가족에게 알려야 할 사실은 무엇이고 비밀에 부쳐야 할 것은 무엇인가, 아동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도 비밀을 계속해서 보장해 주어야 하는가 등이다. 그리고 연구과정에서 밝혀진 학대사실을 어느 시점에

* 본 연구는 2003년도 숙명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음.

¹⁾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전공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Jae Yeon Lee, Department of Child Welfar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140-742, Korea E-mail : seul21@yahoo.com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좋은가, 학대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 주어야 하는가, 아동에게 연구나 조사 참여 동의서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학대받는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격리시켜야 하는가,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의 학대 확인과정이 반드시 필요한지 등도 모두 아동학대 연구와 조사과정에서 피할 수 없이 직면하게 되는 갈등들이다. 미국에서는 1990년대 중반까지 아동학대 연구과정에서의 이와 같은 윤리적 갈등 때문에 아동에게 학대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 학대를 연구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민감한 윤리적 사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아직 없다. 의료계 등 몇몇 특정 아동관련 영역을 제외하고는 연구와 조사과정에서 연구자가 지켜야 할 윤리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지금까지 학대받은 아동은 어떠한 보호조치도 받지 못한 채 연구,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에 대해 그리고 가족과 부모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왔다. 더욱이 아동학대 연구와 조사의 참여여부 등에 대해 아동 자신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동의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동을 도우려는 아동학대 연구와 조사과정이 아동을 또 다른 형태의 어려움에 연루시키는 위험을 부를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아동학대를 연구하거나 조사하는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을 다루고, 그 과정에서 부수되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아동학대를 연구하거나 조사할 때 뒤따르는 윤리적, 도덕적 갈등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해와 민감성을 높이고, 아동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II. 아동학대 연구와 조사의 윤리적 쟁점

1. '적당한 수준'이 아닌 '최선의 것'으로 가치 전환

윤리란 인간 사회의 도덕적 가치를 말한다. “우리는 한 사회의 문화, 태도, 전통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사회구성원들이 그 사회를 다루는 모든 개념들의 총화”이다(Elliot, 1992). 예를 들어, 가족의 신성성을 굳게 믿고 있는 사회는 가족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로운 가족상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윤리적 이념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이념을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한다.

생명윤리학에서 법은 옳고 그름을 규정하는 ‘최소한의 도덕성’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Annas, 1994). 여기서 법은 최소한의 보호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최상의 보호를 제공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윤리는 이상을 추구한다(Jonsen, 1991).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동복지 서비스 체계는 생명윤리학의 관점과는 달리, 가족이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최소한의 준거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만 가족 문제에 개입한다. 가족이 역기능을 보일 때만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국가가 가족의 신성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이념을 갖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전적인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가의 일차적 관심은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최상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가족의 역기능을 초래하는 위험요소가 무엇 인지를 밝혀내고,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지원책을 개발하여 사용하는데 있다.

가족의 자율성과 신성성에 대한 국가의 이념은 학대 아동보호서비스에서도 아동의 발달을

위협하지 않는 ‘최소한의 양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주로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보호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아동의 발달이 심각한 정도로 위협받는 상황에서 비로소 개입이 시작된다. 그 결과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국가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념이 지배적일 경우, 아동과 관련된 개별 전문가 집단은 가족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활동을 해야 하고, 나아가서 국가를 대상으로 정책의 이념이 ‘아동을 위한 최선의 것’으로 전환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칠 필요가 생긴다.

그리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정책이 ‘아동을 위한 최선의 것’을 지향하고 이를 성취할 수 없으려면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주변의 문제들, 예컨대 아동 및 가족빈곤, 정신건강의 문제, 약물처치의 문제, 부적합한 지원정책 등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들은 아동보호서비스가 ‘최소한의 도덕 기준을 만족시키는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이것은 최소한의 아동보호서비스 체계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우리나라의 아동보호 관련법과 정책을 압박하고 있다.

2. 아동의 필요와 부모의 요구 간의 균형

아동학대에 대한 연구와 조사과정에서 아동의 권리와 부모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주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부모의 친권은 아동학대 연구와 조사과정에서 아동의 권리와 자주 충돌한다.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법적 권한이 아동의 권리보다 언제나 중요하게 다루어져왔다(Lawrence & Kurpius, 2000). 즉 아동의 필요가 부모의 요구에

우선순위가 밀려 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가족의 신성성과 자율성에 대한 신념이 강해서 부모들은 자기가 믿는 바대로 자녀를 양육할 권리를 부여받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부모의 권리를 아동의 권리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학대가 의심이 될 경우에도 아동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의 안녕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도덕적 준거에 따라 부모의 친권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동학대를 다룬다. 부모에게 자녀의 친권을 우선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가족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어떤 경우에는 아동에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부모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부모를 지원한다. 피학대아동에게 시설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도 가족 구성원을 해체하지 않고 가족이 유지되는 것을 더 중요하다고 여긴다면(MacDonald, 1994),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지 않는다.

이러한 조치는 사실상 아동이 처한 위험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으로, 아동보호 서비스과정에서 언제나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것은 아동의 필요와 발달적 요구보다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긴 아동보호 정책이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는데 있어 가족 중심주의 이데올로기가 때로는 강한 비판을 받는다(Gelles, 1973).

부모와 아동의 필요와 요구가 충돌할 경우,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는 아동학대 연구 조사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부모와 자녀들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미묘한 윤리적 갈등은 학대피해아동들의 문제가 대부분 가족과 관련되어 있고, 어떤 경우 아동보호서비스에 가족들이 참

여한다는 점에서 더욱더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아동보호서비스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와 부모의 권리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아동학대 연구와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아동학대 사실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면서, 가족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동시에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조사방법을 개발해야 하는 등, 최소한 세 가지의 서로 상충될 수 있는 부모와 아동의 욕구와 필요를 만족시켜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아동이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은 아동의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때로 아동보호서비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아동의 의견을 중요하게 다루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 이때 아동과 가족의 욕구나 필요 중 누구의 것이 더 중요하고 긴급한가를 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동의 의견이 의사결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아동보호서비스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3. 아동학대 연구, 조사 참여에 대한 동의 얻기

연구를 진행할 때 연구대상자에게 동의를 얻는 것은, 적절한 수준에서 연구와 관련된 정보를 연구대상자에게 알려주는 최소한의 도덕적 행위이다. 아동으로부터 동의를 얻는 것은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학대 연구에서 아동으로부터 동의를 얻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동의서에는 연구의 목적, 연구절차, 연구가 갖고 있는 위험,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점과 위험요소, 연구과정에서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연구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 비밀보장, 질문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연구자가 불가피한 경우 동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연구내용이나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경우도 가끔 있다. 이러한 일은 대다수의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1) 아동과 부모의 동의

아동학대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와 ‘누구로부터 동의서를 받는가?’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부모들이 자녀대신 동의서를 작성해 왔다. 미국상담학회(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 ACA, 1995)는 ‘내담자가 동의서를 혼자서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적절한 수준에서 상담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적절한 수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없다. 부모들이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연구 동의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을 연구에 참여시키는 것은 부모가 참여할 때 가능한 것이다.

아동과 부모 중 누구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가를 결정하는데 아동에 대한 이해와 부모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영향을 미친다. 아동이 성인의 축소물이라는 생각과, 아동의 자율적 능력을 인정하면서 이들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아동에 대한 상반된 이해는 아동학대를 연구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동의서를 대신 작성하는 것의 정당성과 타당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아동이란 출생하는 순간부터 이성적이고 자율

적이라고 볼 수 없어 아동대신 부모가 동의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돌봐야 할 권리가 있다는 전통적인 생각에서가 아니라 성인에게 부모역할을 부여한 사회적 합의 때문에 부모가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Scales, 2002). 이 경우 부모들이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의지가 있어야 하고,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돌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함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모들이 자녀양육에 대한 역량을 고루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부모들이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는가는 항상 문제가 된다. Belmont Commission은 아동이 연구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제삼자인 부모도 연구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자녀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때 이는 거절로 봐야한다.

반면 아동을 성인의 축소물로 생각하는 것은 아이들의 역량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한 것으로, 어떤 아동은 성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책임감이 강하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아동이 스스로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아동으로부터 동의를 얻는 것은 아동이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며 자율적 능력을 지녔다는 것을 인정하는데서 출발한다. 모든 연령의 아동들을 이성적이고 자율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전통적인 생각은 아동들이 독자적인 요구를 갖고 있는 존재임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어느 한 인간이 다른 한 인간에게 정신적으로 ‘종속’할 수 없다 것을 인정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최근에는 아동이 자신의 연구 참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렇지만 과연 아동이 몇 살이 되어야만 연구 참여 여부를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있다. 이러한 논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부모와 아동 모두에게 연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중재적 방법론도 제기되었다.

8세 이상 아동은 혼자서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아동이 심각한 정도의 위험에 빠져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아동만을 대상으로도 동의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종단연구(Longitudinal Studies in Child Abuse and Neglect : LONGSCAN)에서는 주장하였다(Runyan, Curtis, Hunter, Black, Kotch, Bangdiwala, Dubowitz, English, Everson, & Landsverk, 1998). 미국의 경우 많은 주에서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는 연령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소아과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는 7세 정도의 발달수준에 있는 아이들은 동의서에 명시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연구 참여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만큼의 발달적 능력이 있다고 보았다. 국립 캐나다 생명윤리협회(Canadian National Council of Bioethics in Human Research)는 7세에서 14세 사이의 아동들과 그들의 부모한테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영국의학위원회(British Medical Research Council)는 12세의 발달수준이면 연구조사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여부를 표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7, 8세의 발달수준에 있는 아동들은 연구 참여여부를 말로 하고 12세에서 14세의 발달수준에 있는 아동들은 문서로 된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도 있다(Dubowitz & Howard, 1997). 아동들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따른 위험이 연령이 증가하면서 언제나 감소한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매우 복잡한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아동학대 연구과정에서 아동의 연령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또 다른 윤리적 사안은 학대의 경험을 아동에게 직접 물어봐도 괜찮은 가이다. 학대받은 사실을 아동에게 직접 묻는 것이 어떤 위험이 있지는 않는가? 몇 살 정도의 아동에게 학대 사실을 직접 물어볼 수 있을까? 1990년과 1991년에 아동학대와 방임의 결과에 대한 중단 연구에서 나이 어린 아동에게는 학대사실을 직접 묻지 않고,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나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였다(Runyan, 등, 1998). 나이가 든 아동한테만 아동학대 사실을 직접 조사하였다. 학대의 경험에 대해 물어 볼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려서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예, Fergusson, Horwood, & Lynskey, 1997). 1994년에 Chapel Hill에서 있었던 학술대회에서 12세 아동은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학대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가 된다고 보고하였다.

아동학대 연구나 조사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학대 피해자인 아동에게 학대 사실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다는 것은 일종의 모순이다. 따라서 아동학대 사실을 아동에게 직접 확인할 경우 아동이 받게 될 이차적인 손상을 최소화하는 범주 내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연구와 조사가 일반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한편, 동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연구대상자들이 연구 참여를 포기할까봐 연구자들은 걱정한다. 실제로 그러한지는 더 연구해봐야 하겠지만 대체로 동의서를 통해 연구내용을 미리 확인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연구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2) 아동학대 연구와 조사대상자의 표집 아동학대 연구, 조사에서 제기되는 정의적 문

제는 연구대상자 선발과 관련된 부담이다. 즉, 모든 연구는 연구대상자가 표집의 대표성이 있어야 하는데, 아동학대 연구에서 연구대상자는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표집될 가능성이 있어 표집의 편파 가능성이 높다. 즉, 위험에 처한 가족은 연구, 특히 중단연구의 경우, 어떤 치료적 혜택을 받기 위해 아동학대나 가족 내의 다른 부정적인 상호작용에 대해 과대 보고할 가능성이 높다(Putnam, Liss, & Landsverk, 1996). 반면에 자녀 양육의 위험상황에 처한 가족이 연구대상자로 표집될 가능성도 매우 낮아서 실제로 위험에 처한 아동이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어떤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제외될 수 있다(Fisher, 1993).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Kotch(2000)는 연구 참여 동의서에 아동학대나 방임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동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동의서에 아동학대, 방임 등의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가를 고민한다. Institutional Review Board(IRB)는 동의서에 아동학대나 방임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는 사실상 동의서에는 연구과정에서 다루게 될 모든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동의서 구성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실제 위험상황에 처한 많은 아이들이 아동학대 연구와 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을 높인다. IRB는 아동학대나 방임 대신에 포괄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용어를 사용하여 아동들이 연구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관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동들이 연구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이다.

아동학대와 방임을 경험했다는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아동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불미스러운 낙인이 될 수 있다(예, Hampton & Newberger, 1985; Lieter, Myers, &

Zingraff, 1994). 중단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들이 학대의 사실을 관계기관에 알리지 않기 때문에 더욱 복잡한 윤리적 문제가 제기된다. 아동학대 조사기관은 아동학대의 발생률을 주로 횡단적 연구방법으로 조사해 왔다(Theodore & Runyan, 1999). 연구과정에서 발견된 학대 사실을 신고할 경우 연구대상자가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동의의 하지 않는다는 우려 때문에 연구자들은 학대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편파적인 표집은 학대의 위험과 학대의 유형에 대한 새롭고도 타당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한편으로 치료적 효과가 전혀 없는 아동학대 연구의 조사과정에 아동이 참여하는 것이 아동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Ramsey(1970)는 아동들이 자발적으로 동의서를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아동이 직접적인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보고 아동학대 연구에 아동을 참여시키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보았다. 아동에게 어떤 이득도 없는데, 비치료적인 과정에 아동을 참여시키는 것은 일종의 ‘착취’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National Research Council(1993, NRC)은 아동학대 연구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동에게 어떤 치료적 효과를 가져다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지 않고는 아동학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고, 이렇게 되면 학대받은 아동이 오히려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될 수도 있음을 경고하였다.

학대아동을 대신해서 성인들이 아동학대 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아동학대 사실은 동물실험을 통해서 파악할 수도 없으며,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연구방법도 의미가 없다는 데에 아동학대 조사와 연구의 어려움이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하더라도 성인이

항상 같이 참여하고, 아동들이 임상적 연구대상이 아니어야 하며, 학대 위험을 과대평가하지 않을 것 등이 아동학대 연구에서 아동을 참여시킬 때 전제가 되어야 할 조건이다(Giertz, 1983).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어떤 혜택 때문에 연구에 참여하는 일이 흔히 있다.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가족이 받게 될 처벌도 면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가족도 있다.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뒤따라야 아동학대 연구에 대한 아동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 빈곤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이들에게 적은 액수의 돈을 줌으로써 이들이 연구에 참여할 가능성을 높인다. 이러한 방법 또한 표집의 편파가능성을 높인다.

4. 비밀보장의 문제

아동학대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밀보장의 문제는 항상 논란이 된다. 비밀보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아동과 부모 모두 아동학대 사실을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아동의 비밀보장을 다룰 때, 부모의 권리와 아동의 권리 사이의 균형이 늘 문제가 된다. 때로 부모들은 자녀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연구자들이 자녀에 대해 무엇을 알아내었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 아동과 같은 사회의 약자들에 대한 비밀보장의 문제가 그동안 폭넓게 논의되어 왔지만(Gustafan & McNamara, 1987; Issacs & Stone, 1999; Kaczmarek, 2000; Ledyard, 1998; Sealander, Schwiebert, Oren, & Weekley, 1999; Welfel, 2002), 비밀이 보장되어야 할 정보를 부모들이 요구할 때 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의 합의된 지침은 아직 없다. 다만 학대 상담과정에서 부모들이 아동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경우, 부모들에게 정보를 제공한 이후에 이들이 어떤 형태로든 긍정

적인 피드백을 해 줄 수 있다고 판단될 때만 부모에게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Corey, Corey, & Callanan, 1998).

반면에 치료자들의 비밀보장 의무는 아동에 대한 것이지 부모들에 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모들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Myers, 1982). 이와 같은 주장은 아동과 같은 소수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아동들도 성인과 똑같이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Welfel, 2002). 아동이 비밀보장 받을 권리는 법 규정과 사회관습 등에 의해서 자주 묵살된다. 아동의 비밀이 누설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으려면 법, 윤리적 지침, 그리고 사회적 관습 등의 제약을 뛰어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미국의 경우 비밀 보장이 위협받으면 국립보건원의 연구보호부(Office for Protection from Research Risks of 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에 의뢰하여 자신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비밀보장이 사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다.

원칙적으로 동의서에 작성된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동학대 조사,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각기 자기 영역의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사실에 대한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동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연구대상자에 대한 의학적 정보가 노출되었을 경우,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나 간호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경우 연구자들은 동의서 작성과정에서 발견된 자료들의 비밀을 보장할 수 있게 세밀하게 연구조사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Kotch(2000)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아동학대를 추정할 수 있는 어떤 단서도 연구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질문지를 정교하게 구성하였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질문들을 질문지의

맨 마지막 부분에 배치하고, 연구대상자들이 조사자로부터 동의서를 건네받고 직접 질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선다형으로 구성된 몇 가지 내용의 반응 중에서 해당하는 것에 체크하도록 구성하였다.

연구자들은 비밀을 보장해야 할 윤리적, 법적 책임을 느끼며, 동시에 책임 있는 기관에 연구과정에서 발견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 또한 있다. 아동학대 연구는 이에 관련된 사람들의 감정과 이해, 그리고 학대 평가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들간의 사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점에서 비밀보장의 예외적 상황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간혹 아동보호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 연구과정에서 발견된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연구자들은 언제, 어느 정도로, 어떤 내용의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학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며, 학대 아동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조사과정에서 정보가 공유되면, 비밀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침해될 소지가 커진다. 정보가 본래 목적인 바대로 사용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는 비밀이 공개될 가능성이 더 높다. 특히 컴퓨터로 정리된 자료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수록 자료의 비밀보장이 위협받을 소지가 많다. 환자와 의사간의 비밀보장이 다른 영역에 비해 잘 되는 의료계도 다른 부서에서 환자의 정보를 필요로 할 때는 정보를 관련자간에 공유하되, 반드시 환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일 때에 한해서 비밀보장의 예외가 적용된다.

영국의학협회(British Medical Association, 1987)는 의료진들이 아동학대 사례회의에서 정

보를 제공한 사람의 허락이 있을 경우에만 사례 판정 위원들에게 아동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는 전문가들이 더 나은 아동보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동과 가족 그리고 전문가의 요구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정보를 개방했을 때의 위험이 최소한이 되도록 해야 한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한 개인이나 한 기관의 보호보다는 언제나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비밀보장의 문제는 아동학대 신고제도와 연결되어 있다. 학대아동을 발견했을 때 신고해야 하는 제도는 사실상 연구과정에서 발견되는 현재의 위험한 학대 사실에 대한 비밀보장을 어렵게 한다.

부모와 아동 모두 아동학대 사실이 노출되는 것을 꺼릴 수 있고 정보가 노출되는데 대해 당황할 수 있다. 학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아동 자신이 학대를 설명하면서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질 우려도 있다(Kotch, 2000). 부모 또한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고, 정신적 충격에 휩싸일 수도 있다. 아동학대 조사과정에서 가족의 비밀이 공개됨으로써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얼마나 오랫동안 학대가 계속되어 왔는지, 학대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지, 누가 학대 사실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연구,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일을 누가 알고 있는지 등에 따라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의 양상과 정도는 차이가 있다.

연구과정에서 부모들이 갖게 되는 정서적 안정감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 아동학대가 신고 되면, 부모가 아동을 비난할 수 있고 이는 오히려 아동을 더 큰 위험상황에 빠뜨릴 수 있다. 가족들이 아동보호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동정의 대상이 되거나 학대가정이라는 부정적인 낙인이 찍힐 우려가 있다. 어느 상황이든 비밀보장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과 ‘발달수준’이 고려되어야 한다(Gustafson & McNamara, 1987).

5. 연구,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아동학대 사실의 신고문제

아동학대 연구자들은 비밀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동시에 연구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해당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보건의관계자, 교사, 아동관련 종사자들은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연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아동학대 사실을 아동보호 기관에 보고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아동학대 연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윤리적 갈등이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연구과정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아이를 아동보호 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 연구조사과정에서 ‘현재의 심각한 위험’을 명확하게 밝혀내고,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와는 상반되게 아동보호기관에 학대 아동을 신고하지 않아야 아동학대나 방임에 대한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아동학대 연구에 개입되는 윤리적 논란을 줄이면서 아동학대를 연구하려면, 아동학대 사실을 연구자의 기록에 남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동보호 기관에 아동을 신고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아동보호기관에 아동을 신고해야 하는가는 동의서의 성격, 비밀보장에 대한 믿음, 신고했을 경우 부모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연

구의 본래 목적, 사후서비스 과정의 유무, 아동에게 닥친 위험수준 등을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연구과정에서 알게 된 아동학대를 신고했을 때 연구대상 가족이 법적인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연구 참여를 포기하게 되거나, 연구대상자들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어 자료가 신뢰할만하지 못하며, 표집이 편파적일 우려도 있다. 이처럼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아동학대가 발견되어도 신고를 꺼린다.

아동학대 사실을 아동보호 서비스 체계에 보고하는 것이 아동에게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아동에게 해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학대사례를 신고하는 것 자체가 아동을 윤리적 딜레마에 빠뜨리는 것이다. 학대를 신고할 의무가 법에 명시되어 있어도 신고에 따르는 부정적인 결과 때문에 학대 관련 전문가들 중에는 학대가 의심이 되는 사례를 관련기관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Sedlak & Broadhurst, 1996).

그러나 아동이 학대 상황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연구 중 발견한 학대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아동에게 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어떤 경우에도 아동을 도와주는 행동이 무엇일지를 확신하기란 쉽지 않다. 과연 어떤 행동이 윤리적인가, 그리고 아동이 학대의 위험에 처해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까와 관련된 갈등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서 일부분 완화될 수 있다.

1. 학대의 위험이 어느 정도인가.
2. 누군가 아동주변에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3. 학대 사실이 보고된 적이 있는가.
4. 최근에 발생한 학대는 어떻게 해서 일어났

는가.

5. 신고하는 것이 학대받는 아동을 도울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일까.

연구자들이 학대의 사실을 알 수 있는데도 아동학대 사실을 감지하지 못하는 척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동이다. 학대받는 아동을 신고하는 것이, 그리고 아동들에게 필요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동학대 연구자, 조사자 모두에게 윤리적인 행동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더 이상의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의 위험을 방치하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이다.

아동이 극심한 위험에 처해있다고 연구자가 판단하여서 학대 사실을 누가 알고 있으며 학대당한 아동이 어떤 도움을 원하는지와 같은 정보를 모으는 것에서부터 일차적인 개입이 시작된다. 만일 아동이 도움받기를 원한다면 연구자는 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동이 상황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학대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Ⅲ. 아동학대 연구, 조사에서 아동보호를 위한 방안

아동학대 연구와 조사에서 겪게 되는 도덕적, 윤리적 논쟁은 예상을 훨씬 넘어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부모-자녀관계라는 본질적인 가족관계를 다루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복잡하게 전개된다. 아동의 고유한 발달적 특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있고,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서 대우해야 한다는 점이 최근에 강조되고 있기는 해도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전통적 인식을 부모들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아동학대 연구와 조사과정에서의 윤리적 논쟁은 더욱 가열된다. 독자적 인격

체로서 아동의 개별적 가치를 비교적 중시해온 서구국가들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전통적 이해의 틀을 ‘권리의 주체’라는 아동에 대한 신개념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여전히 고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의의 마지막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연구와 조사과정에서의 윤리적 쟁점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행동계획을 법제정과 정책 개발, 관련기관과 연구기관의 역할 차원에서 몇 가지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관련법 제정과 정책개발

1) 아동학대 연구에서 아동보호에 대한 윤리 강령 제정

아동학대의 발견에 일차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현재의 우리 상황에서 아동학대 연구와 조사과정에서 제기되는 윤리적 쟁점을 인식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2000년에 와서야 아동보호 체계를 수립한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학대받는 아동을 발견하고,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하며 학대의 후유증이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데 노력해왔다. 이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를 중요하게 고려하거나 부수되는 윤리적 갈등에 관심을 두지 못하였다. 그러나 앞서의 논의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연구와 조사과정에서 아동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상당한 정도의 심리적, 정신적인 손상을 경험할 수 있고, 부모의 권리와 아동의 권리간의 첨예한 윤리적 갈등이 내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아동학대 연구와 조사에서 아동보호에 관한 윤리강령이 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연구와 조사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윤리적 쟁점을 심의하는 부서를 두어서 아동학대연구와 조사의 실시여부를 심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아동보호 윤리강령에는 연구와 조사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조사방법이 개발되어야 하고, 연구와 조사과정에서 나타나는 윤리적 사안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상세하게 규정해야 한다. 예컨대 동의서를 작성하는 연령과 부모가 어느 과정까지 동참해야 하는지, 비밀보장을 준수해야 할 의무 등에 관해서 규정이 필요하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도 연구윤리 규정에 명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아동보호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2) 아동학대 연구에 대한 보호인증제 실시

아동학대 연구에 참여하는 아동과 부모 등에 대한 보호인증제를 실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아동학대 보호인증이 있어야 아동학대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 관련 통계자료 내용도 보호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아울러 아동학대 연구 및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이에 관련한 교육의 의무적으로 이수하여 ‘아동학대 보호인증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아동학대 연구를 위한 기금의 확대

정부는 아동학대 연구를 위한 사회기금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로써 정부의 주도하에 아동학대 실태조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우리나라 아동들이 실제 어떠한 양육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부적절한 양육환경에 노출된 아동들에게 예방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비행을 예방할 수 있다. 연구 기금이 확보되면 정부 지원을 받고 수행되는 아동의 복

지관련 연구과정에서 노출된 아동학대에 대한 연구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2. 아동보호서비스 기관의 역할

아동학대 사례집을 배포해야 한다. 아동학대 사례집 배포시 다수기관이나 사람들에게 배포하는 것은 아동의 비밀보장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아동학대 사례집을 연구자와 관련기관으로 한정해서 배포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의 아동 관련학과와 관련 아동복지 기관들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개입될 수 있는 윤리적 사안들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교육도 필요하다.

3. 연구기관의 역할

아동학대 연구조사에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연령에 관한 연구를 실시해야 한다. 몇 세 아동부터 혼자서 아동학대 연구 참여 동의를 작성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 사실에 대해 보호자 없이 아동을 조사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연구와 조사과정에서 부모 등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과의 동반 여부가 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 연구를 실시하여 이에 관한 규정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외에도 연구 참여 동의서 작성절차와 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부모와 아동에게 사실과 다르게 연구내용을 알려주거나, 연구내용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 동의서는 연구목적, 질문의 내용, 연구대상, 그리고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작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양한 형식의 동의서를 개발하는 것이 좋다.

IV. 결 론

아동학대 분야는 윤리적 문제가 따르는 영역이다. 그러나 학대받는 아동의 연구와 조사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침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한 논의 자체가 아동학대 사실을 밝혀내는데 관심이 집중된 현재의 우리 상황에서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다.

이제 우리사회도 아동학대를 다룰 때 제기될 수 있는 윤리적 쟁점을 아동보호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때가 되었다. 아동학대 연구자들이 직면하는 윤리적 딜레마는 연구를 주춤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윤리적, 도덕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심각한 정도의 윤리적 갈등을 당연하게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동학대 연구, 조사는 아동에게 위험이 있다고 확신할 때에 가능한 것이다. ‘연구에서 예상되는 윤리적 위험의 정도’가 크지 않을 때 연구를 지속할 수 있다.

아동학대 연구에서 제기되는 복잡한 윤리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윤리적 사안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아동학대 조사과정에서 파악된 정보의 누설을 방지할 수 있는 아동보호 인증과 정도 만들어야 한다. 학대아동을 위한 연구와 보호서비스 과정에서 정작 보호의 대상이 되는 아동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경우가 거의 없는 현실은 아동보호에 관한 윤리강령의 제정이 시급함을 나타내주는 것이기도 하다.

참 고 문 헌

- Annas, G. I.(1994). Will the real bioethics(commission) please stand up? *Hastings Center Report*, 24(1), 19-21.
- British Medical Association.(1987). BMA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Lancet*, 1(8542), 1159.
- Corey, G., Corey, M. S., & Callanan, P.(1998). Issues and ethics in the helping profession(5th ed.). Pacific Grove, CA : Brooks/Cole.
- Elliot, E.(1992). Where ethics comes from and what to do about it. *Hasing centre Report*, 22(4), 28-35.
- Fergusson, D. M., Horwood, L. J., & Lynskey, M. T. (1997). Childhood sexual abuse, adolescent sexual behaviors and sexual revictimization. *Child Abuse & Neglect*, 21(8), 789-803.
- Fisher, C. B.(1993). Integrating science and ethics in research with high-risk children and youth. Social policy report,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hood*, 53, 443-446.
- Gelles, R. J.(1973). Child abuse as psychopathology : A sociological critique and reformulatio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43, 611-621.
- Giertz, G.(1983). Ethical aspects of paediatric research. *Acta Paediatrica Scandinavica*, 72, 641-650.
- Gustafson, K. E., & McNamara, J. R.(1987). Confidentiality with minor clients : issues and guidelines for therapists. *Professional Psychology : Research and Practice*, 18, 503-508.
- Hampton, R. L., & Newberger, E. H.(1985). Child abuse incidence and reporting by hospitals : Significance of severity, class, and race.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75, 56-60.
- Howard, D.(1997). Ethical Issues in Professionals' Response to child Maltreatment. *Child Maltreatment*, 2(4), 348-355.
- Isaacs, M. L., & Stone, C.(1999). School counselors and confidentiality : Factors affecting professional choices.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2, 258-66.
- Jonsen, A.(1991). The ethics of pediatric medicine. In A.P. Martin Rudolph(Ed.), *Rudolph's pediatrics* (19th ed., 7-14) New York : Appleton and Lange.
- Kaczmarek, P.(2000). Ethical and legal complexities inherent in professional roles with children and adolescent clients. *Counseling and Human Development*, 33(1), 1-21.
- Kotch, J.(2000). Ethical Issues in Longitudinal Child Maltreatment Research,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5(7), 696-709.
- Lawrence, G., & Kurpius, S. E. R.(2000). Legal and ethical issues involved when counseling minors in nonschool setting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8, 130-136.
- Ledyard, P.(1998). Counseling minors : Ethical and legal issues. *Counseling and Values*, 42, 171-177.
- Lieter, J., Myers, K., & Zingraff, M. T.(1994). Substantiated and unsubstantiated cases of child maltreatment : do their consequences differ? *Social Work Research*, 182, 67-82.
- MacDonald, H.(1994). The Ideology of Family Preservation. *The Public Interest*, p115.
- Myers, J. E. B.(1982). Legal issues surrounding psychotherapy with minor clients. *Clinical Social Work Journal*, 10, 303-314.
- Putnam, F. W., Liss, M. B., & Landsverk, J.(1996). Ethical issues in maltreatment research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In K. Hoagwood, P. S. Jensen, & C. B. Fisher(Eds.), *Ethical Issues in Mental Health Research with Children*(113-132). Mahwah, NJ : Lawrence Erlbaum.
- Ramsey, P.(1970). Consent as a canon of loyalty with special reference to children in medical investigation. In P. Ramsey(Ed.), *The Patient as a Person*. New Haven, CT : Yale University Press.
- Runyan, D. K.(2000). The Ethical, Legal, and Methodological Implications of Directly Asking Children

- about Abus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5 (7), 675-681.
- Runyan, D. K., Curtis, P. A., Hunter, W. M., Black, M. M., Kotch, J. B., Bangdiwala, S., Dubowitz, H., English, D., Everson, M. D., & Landsverk, J. (1998). LONGSCAN : A Consortium for longitudinal studies of maltreatment and the life course of children.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3, 235-245.
- Scales, S.(2002). Intergenerational Justice and care in Parenting. *Social Theory and practice*, 28(4), 667-677.
- Sealander, K. A., Schwiebert, V. L., Oren, T. A., & Weekley, J. L.(1999). Confidentiality and the law.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3, 122-127.
- Sedlak, A. J., & Broadhurst, D. D.(1996). The third national incidence study of child abuse and neglect. Washington, DC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Theodore, A. D., & Runyan, D. K.(1999). A medical research agenda for child maltreatment : Negotiating the next steps. *Pediatrics*, 104, 168-177.
- Welfel, E. R.(2002). Ethics i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Pacific Grove, CA : Brooks/Cole.

2004년 12월 31일 투고 : 2005년 2월 19일 채택